

	취·창업 지도위원회 규정	문서번호	5-1-40		
		제정일	2017. 10. 13.		
		개정일	2022. 02. 18.		
		페이지	1/2	관리 부서	산학협력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여자간호대학교의 취·창업지원에 대한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 및 임기) ① 취창업 지도위원회는 취창업 지원 센터장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한다.

1. 위원장은 취창업 지원 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한다.
2. 위원장 이외의 위원은 산업체 1인과 본 대학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
3. 위원장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,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3조(기능) ① 학생들의 체계적인 진로설정 및 효율적인 취·창업활동을 지원하여 취업률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.

1. 취·창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, 관리, 제공에 관한 사항
2. 취·창업관련 지원사업 운영에 대한 자문, 심의, 평가에 관한 사항
3. 취·창업관련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
4. 취업통계 및 추천서 등 기타 취·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

제4조(회의소집과 의결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제5조(간사)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
② 간사는 산학협력처 직원으로 하며, 서기 업무를 함께 담당한다.

제6조(비밀엄수의 의무)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	취·창업 지도위원회 규정	문서번호	5-1-40		
		제정일	2017. 10. 13.		
		개정일	2022. 02. 18.		
		페이지	2/2	관리 부서	산학협력처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